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미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

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 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관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 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미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1조제2항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및 보건소 등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 가내시」 산출기준 적용
 - 사업비(연도별)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연간 412,000천원 (2차~5차년도)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 연간 400,000천원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연간 12,000천원
- ※ 2026년 사업비(1차년도) : 31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사업비 (국·도비)	201,500	267,800	267,800	267,800	267,800	1,272,700
	소계(a)	201,500	267,800	267,800	267,800	267,800	1,272,700
세출	○ 사업비 (국·도·시비)	310,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1,958,000
	소계(b)	310,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1,958,000
□ 총 비용(a-b)		△108,500	△144,200	△144,200	△144,200	△144,200	△685,3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55,000	206,000	206,000	206,000	206,000	979,000
도비	46,500	61,800	61,800	61,800	61,800	293,700
시비	108,500	144,200	144,200	144,200	144,200	685,300
민간						
기타						
합계	310,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1,958,000

5. 부대의견

- 사업비(412,000천원)는 매년 국비·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서비스 구성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 사업비 지원 규모는 지역 여건 변화(재정자립도, 고령화율 등) 및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조례 자체는 의무지출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지만, 조례 근거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상기 비용이 소요됨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하경호(☎480-515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연도별)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 가내시」 산출기준 적용

- 1차년도(2026년) : 310,000천원 (3월~12월)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 300,000천원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10,000천원
- 2차~5차년도 : 412,000천원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 연간 400,000천원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연간 12,000천원
- 세부 구성(2026년 기준)
 - 일상생활 돌봄(가사 지원·식사 지원·이동 지원 등)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무관리·홍보물 제작
 - 교육·행사 실비, 회의수당 등

※ 구미시 지역여건에 따라 항목 간 탄력 조정 가능

소 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창 수
	팀 장	김 율 자
	담 당 자	하 경 호 (480-5155)